

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	1992. 6. 9	조례 제1293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8. 7. 3	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17호
	2006. 7. 28	조례 제 822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8. 9	조례 제1834호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6. 7. 28, 2018. 8. 9>

제2조(구성) 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6. 7. 28, 2018. 8. 9>

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7. 10. 2>

③ 위원은 시 본청의 각 실·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또는 대학교수, 시민단체대표,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시의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6. 7. 28>

제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 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6. 7. 28]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시장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3.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삭제 <2018. 8. 9>

[전문개정 2006. 7. 28]

제6조(위원회의 개최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,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 <개정 2006. 7. 28, 2018. 8. 9>

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9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1998. 7. 3, 2005. 10. 5, 2012. 12. 11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7. 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10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17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7. 28 조례 제822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⑦ 까지 생략

⑥⑧ 「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⑩ 까지 생략

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부칙 <2018. 8. 9 조례 제1834호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 및 제70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”로 하고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”를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”를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수립 및 정기공시”를 “수립”으로 한다.